

#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0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0. 12) 상정
-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0. 12) 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강 성 모)

가. 제안이유

- 각 기금별로 기금고유목적사업에 한하여 운용되고 있는 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수익을 높이고,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용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함.(안 제4조)

- 통합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용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로 함.(안 제5조)
- 통합기금의 예탁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함.(안 제7조)
-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통합기금의 총괄기금관리관을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정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SOC 사업 등 다른 목적 사업에 기금 재원의 투자 시 고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짐.	○ 통합기금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고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임.
○ 통합관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 서울시 구로구청을 비롯하여 인천시 등 몇 개 자치단체가 있음.
○ 시금고를 비롯하여 타 금융기관 분산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의 하위 규정인 관련 규정과 지침 제정시 검토할 것임.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기금의 수익률 증대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으로 용자 재원을 활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함.

다만,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금융관계 전문가 2인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수정동의코자 함.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시 SOC 및 투자사업 등에 대한 무리한 재원의 활용(투자)시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신중한 기금 재원의 운영이 요구됨.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38호
의결 년월일	2005. 10. 12 (제122회)

제안년월일 : 2005. 10.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수정이유

- 통합관리기금의 통·폐합 및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당초 기금조성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위원을 13인으로 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금융관련 전문가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수정.

##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자 하였으나 '13인 이내'로 수정(안 제8조제3항)
-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금융관련 전문가 2인을 추가토록 수정(안 제8조제4항제2호 신설)

#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3항중 ‘10인’을 ‘13인’으로 한다.

안 제8조 제4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호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금융관련 전문가 2인

## 신 · 구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위원회 설치)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2. (생략)</p>	<p>제8조(위원회 설치)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p> <p style="padding-left: 40px;">..... <u>13인</u> .....</p> <p style="padding-left: 40px;">.....</p> <p>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금융관련 전문가 2인</u></p> <p>3. (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천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시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금고를 말한다.
4.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타 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4. 통합기금 용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용자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및 각 기금의 통폐합 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기금의 개별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금융 관련 전문가 2인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구성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②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

칙」”으로 하며, 제6조의2제4항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고, 제6조의5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7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④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제14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6조 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9조중 “부천시재무회  
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⑦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노인복  
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⑨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9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⑩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17조중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 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⑫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⑬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⑭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중 “개발이익환수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동조 제2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⑮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

제8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